| 고용노동부 | 보도설명자료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 |
|---|---|---|---|
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 일시 | 2022. 9. 16.(금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노동시장정책관<br>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| 책임자 | 과 장 박병기 (044-202-729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배지연 (044-202-7229) |

#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과 밀도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.

## 1. 주요 기사 내용

□ 9.16.(금) 경향신문(인터넷), “한국인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, 고용유지지원금 가장 많이 받았다.” 기사 관련

| |
|---|
| ㅇ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이 정작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외국 국적 항공사(외항사) 중에서 가장 많이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.<br>- 고용 유지 의지가 없는 기업이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가는 것을 막거나 감시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<br>○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회사에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<br>-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들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걸어야 비로소 사안이 드러나는 점도 문제다.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사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셈이다. |

## 2. 설명 내용

□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**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**가 고용조정(해고 등)을 하지 않고 **고용유지조치**(휴업·휴직 등)를 실시하는 경우 **인건비를 지원**하는 사업으로

○ 사업주는 **고용유지조치기간**(휴업·휴직 기간)과 **그 이후 1개월**(감원방지 기간) 동안 **고용조정(해고 등)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**

*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: "생략….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"

○ 우리부는 지원 이후에도 감원방지 기간 동안 **고용조정(해고 등)** 실시 여부를 **모니터링**하여 **인위적인 감원**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 **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** 하고 있음

□ 동방항공의 경우 감원방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간제 승무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**"해고무효확인 소송"이 제기**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**고용조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**

○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**갱신기대권을 인정**하고 **부당해고라 판결**하였음

○ 이에, 우리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**고용유지지원금 환수를 검토**하고 있음

□ 아울러, 우리부는 **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**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**고용안정에 필요한 지원**을 하는 동시에,

○ 지원 받은 사업주가 **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**되면 해당지원금을 **환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**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